부가통행료 납부 이의신청서

신청인	성 명		연 락 처	
	차량번호			
	주 소			
신청사유	아래에 부가통행료납부에 대한 이의사유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 *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(출국증명, 병원입원증명, 이사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, 기타 입증 서류 등)와 함께 아래 팩스번호로 보내주십시오.			
통행료 부과내역	미 납 일 시		미 납 건 수	
	미납통행료	원	부가통행료	원

상기 본인은 미납통행료를 납부하겠으며, 부가통행료는 감면을 요청합니다.
본건 이후부터 발생하는 부가통행료에 대하여는 납부할것 입니다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)

수원순환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

※ 부가통행료 부가 사유: 1차안내문, 2차고지서에서는 미납통행료만 납부할 것을 고지해 드리며, 2차까지 미납 시 3차고지서에서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미납통행료와 별도로 부가통행료(미납통행료 10배)가 부과됩니다.

※ 부가통행료 이의신청서는 1회에 한하여 적용되며, 차후 발생하는 부가통행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부를 해야합니다

연락처	전 화	팩 스
장안영업소	070-8031-8864	070-8031-8860

접수일	
완납일	